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19460(본소), 2019가합515861(반소) 판결 [주식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현

변론 종결2019. 3. 21.

판결 선고2019. 4.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4. 2.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가 발행한 피고 명의 주식(보통주, 액면가 500원) 1,100,000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11만 주를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본 계약은 주식회사 A(양도자, 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지분(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을 B(양수자, 이하 "을"이라 함)에게 양도하기 위함이다

제2조 :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C
- 2) 주식수 : 일십일만 주(110,000주)
- 3) 주식단가 : 오천 원(5,000원)
- 4) 총액 : 오억 오천만 원(550,000,000원)

제3조 : 을은 제2조의 내용에 의거 2016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금으로 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2017년 1월 31.일까지,

잔금으로 금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원)을 2017년 2월 28.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갑의 은행구좌 : 국민은행 D)

제6조 : 을이 제3조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또한 이전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갑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2017. 1. 31. 중도금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및 C 주식의 양도에 관한 추가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고 한다).

주식회사 A (양도자, 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지분(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을 B (양수자, 이하 '을'이라 함)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 계약한(2016. 12. 20.) 내용에 대하여 추가 합의한다.

1. 주식양수 잔금으로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을 기 계약서에는 2017년 2월 28.일로 '갑'에게 '을'이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 합의에 의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을'이 양수대금을 미지급시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권한을 2017년 1월 31.일 자로 양도하며, 양도후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권 최종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한다.
3. 현재(주) C 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 감사 G 의 사임은 합의서 작성일로 한다. 추후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 감사 G 은 사임전 후 발생하는 (주) C 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면한다. 또한, (주)C 의 대표이사는 위 면책사실에 대하여 합의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2. 1. 다시 이 사건 추가합의에 의한 C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일을 2016. 12.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C 주식 1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마. 원고 측에서 선임한 C의 사내이사 F, E과 감사 G은 각 2017. 2. 23.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측에서 선임한 C의 사내이사 B, H, I, 감사 J이 취임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은 2017. 3. 24. 액면금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되어 110만 주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C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추가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2017. 6. 30.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 측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약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C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것인데, 그러한 수익의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②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 측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본소에 관하여 항변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이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의 대표이사인 K은 C의 대주주이던 원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방송제작에 필요한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하반기 무렵 'M'라는 제목의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고 한다)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투자 대비 목표 수익률을 60%로 제시한 사실, K은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근거로 모태펀드, 벤처캐피탈 등에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10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신주 200만 주를 받은 사실, 한편 C는 'N'(위 'M'의 제목을 바꾼 것이다)라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7. 11. 30.부터 2018. 3. 31.까지 O와 인터넷 방송 P 등을 통해 방송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우선 위 각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인 L이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만들 때

K에게 자문 또는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C의 수익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C의 수익성이나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어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인 L,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K이 제시한 이 사건 투자제안서의 내용이나 C의 재무상태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도계약으로서,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수익성을 어떠한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C의 재무상태나 수익성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있지 않다.

②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며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람은 C의 대표이사 K이고, 그 과정에 원고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만 원고의 직원 L이 이 사건 투자제안서의 작성 과정에 일부 자문 또는 검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원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투자제안서는 본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홍보하여 투자를 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최악의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적시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서 제시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⑤ C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성패에 따라 수익성이나 재무상태의 변동이 심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무상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는 당시 C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를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제작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C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L, K), 그 재무제표 등이 허위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⑦ C가 당초 예상보다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 위 방송프로그램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8. 4. 2.까지는 이 사건 추가합의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판사김인택

판사강상효

판사이상언